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



##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및 체계)

- 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규정(이하 “본 규정”)은 준법통제기준 세부지침에 따라 회사(이하 “회사”)의 준법통제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② 본 규정은 준법통제기준 세부지침 제2조 제2호에 따른 준법통제활동의 일환으로, 준법통제기준 세부지침의 하위규정으로 작용한다.

### 제2조(적용범위)

- ① 본 규정은 회사의 모든 사업 활동에 적용한다.
- ② 본 규정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실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감독 등 내부 준법시스템을 의미한다.
2. “자율준수 운영주체”란 “자율준수관리자” 및 “자율준수전담팀”을 의미한다.
  1.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2. “자율준수전담팀”은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자율준수관리자를 보좌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임직원”은 회사에 소속된 임원 및 직원 뿐만 아니라 회사로부터 위임 또는 관리, 감독을 받아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4. “공정거래 법령”이란 공정거래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약관규제법, 표시광고법 등 공정거래 분야의 관련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 일체를 의미한다.

## 제 2 장 자율준수 프로그램 추진체제

### 제4조(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내용)

회사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1. 자율준수 운영주체 임명
2. 공정거래 리스크 평가 실시
3. 사전 업무 협의제도 실시
4. 공정거래 교육 시행
5. 내부제보 시스템 운영
6. 공정거래편람 및 가이드 작성·배포
7. 공정거래 운영방침 수립
8.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상황 공개

#### 제4조(자율준수 운영주체 임명)

- ① 회사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자율준수관리자와 자율준수전담팀 (“자율준수 운영주체”)을 임명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준법지원인(준법통제기준 세부지침 제2조 제3호)이 담당하며, 자율준수전담팀은 법무실(공정거래법무팀)이 담당한다.

#### 제5조(자율준수 운영주체의 업무)

- ① 자율준수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다.
  1. 공정거래 리스크 평가 실시
  2. 공정거래 법령 관련 사전 업무 협의제도 실시
  3. 공정거래 법령 관련 교육 시행
  4.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작성 및 배포
  5. 공정거래 법령 관련 가이드(공정거래방침) 수립 및 배포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한 제반 업무
- ② 자율준수전담팀은 전항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 제6조(공정거래 리스크 평가)

- ① 자율준수 운영주체는 회사의 공정거래 법령 준수와 관련한 리스크를 점검·확인·조사하는 업무(이하 “공정거래 리스크 평가”)를 실시한다.
- ② 공정거래 리스크 평가는 준법통제기준 세부지침 제16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준법통제체제 하의 리스크 프로파일(Risk Profile) 관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

#### 제7조(사전 업무 협의제도 실시)

- ① 회사는 임직원이 공정거래 법령 관련한 문의가 있을 경우 자율준수 운영주체와 사전에 업무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제1항의 사전 업무 협의는 법무검토시스템(<http://elms.lguplus.co.kr>)을 통한다.

### 제8조(공정거래 교육 시행)

- ① 회사는 임직원의 공정거래 법령 준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공정거래 법령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부여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교육(이하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한다.
- ② 제1항의 공정거래 교육은 준법통제기준 세부지침 제21조에 따른 준법교육의 일환으로 시행하며, 이외에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율준수 운영주체의 판단에 따라 추가적인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 제9조(내부제보 시스템 운영)

- ① 회사는 준법통제기준 세부지침 제25조에 따라 준법 의무 위반에 대하여 내부제보 시스템(<http://smartwork.lguplus.co.kr/mod.main.dev>; 이하 “내부제보 시스템”)을 통해 즉시 제보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회사는 위반행위를 제보한 것을 이유로 해고 등 기타 어떠한 불이익한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④ 회사는 위반행위를 제보한 것을 이유로 근무 및 직장 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⑤ 회사는 내부 제보자에 대한 익명성·비밀성을 보장한다.

### 제10조(공정거래편람 및 가이드)

- ① 자율준수 운영주체는 임직원들이 공정거래 법령 준수를 위한 세부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는 공정거래편람(이하 “공정거래 편람”)을 작성하여 임직원에게 배포한다.
- ② 공정거래 편람은 연1회 내외로 재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거쳐 변경 및 배포한다.
- ③ 자율준수 운영주체는 공정거래 편람 이외에도 임직원의 구체적인 행동방침을 정한 가이드(공정거래방침)를 작성·배포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상황의 공개)

- ① 회사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회사의 실천의지를 표명하기 위하여 자율준수 프로그램과 관련한 운영규정 및 공정거래방침 등을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임직원들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회사 내부 시스템을 통하여 공정거래 편람 등을 공개하고, 임직원들의 준법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서약서를 수취할 수 있다.

## 제 3 장 임직원의 의무

### 제12조(임직원의 의무)

- ① 임직원은 공정거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업무수행 시 공정거래 법령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자율준수 운영주체의 법률검토를 받아야 한다.
- ③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또는 위반소지를 인지한 임직원은 신속하게 상급자 또는 본 규정 제9조에 따른 내부제보 시스템에 보고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임직원은 회사의 요청에 따라 공정거래 교육에 참가하고, 공정거래 편람 및 가이드를 숙지하여야 한다.

### 제13조(임직원의 금지사항)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스스로 법령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
2. 다른 임직원에 대하여 법령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지시하는 것
3. 다른 임직원의 법령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묵인하는 것

## 제4장 평가·보고·문서관리

제14조(평가 및 보고) ① 자율준수 운영주체는 준법통제기준 세부지침 제7조 제2항에 따라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비롯한 준법통제체제의 유효성 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율준수 관리자는 제1항의 결과를 연 1회 내외로 이사회에 보고한다.

### 제15조(문서관리)

① 회사는 자율준수 프로그램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자율준수 관리자의 책임 아래 분류·보관·보존한다.

1. 자율준수 관리자(운영주체) 임면(제4조) 관련 자료
2. 공정거래 리스크 평가(제6조) 실시 결과
3. 사전업무 협의제도(제7조) 실시 결과
4. 공정거래 교육(제8조) 실시 결과
5. 내부제보 시스템(제9조) 운영 결과
6. 공정거래편람 및 가이드(제10조)
7.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제출한 관련 자료 일체

② 제1항의 문서 보존기간은 7년으로 한다.

\* \* \* \* \*